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983

2025. 9. 1.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5. 8. 11. 박석 의원 발의 (2025. 8. 14. 회부)

2. 제안이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대응 절차 및 통지·신고 시한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함.

○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일선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유출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6호).

나. 각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5조제4항까지).

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안 제7조제1항).

라.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신고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안 제7조제3항).

마.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명정보 전담 결합기관 지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 (안 제13조의2).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의2,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2조의1, 안 제13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 및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내 개인정보 취급·책임·처리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가명정보 결합 등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 개인정보 관리체계

○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실무자인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상 명확히 정의하지 않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법 제28조[1]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 개인정보취급자----------. ② (현행과 같음)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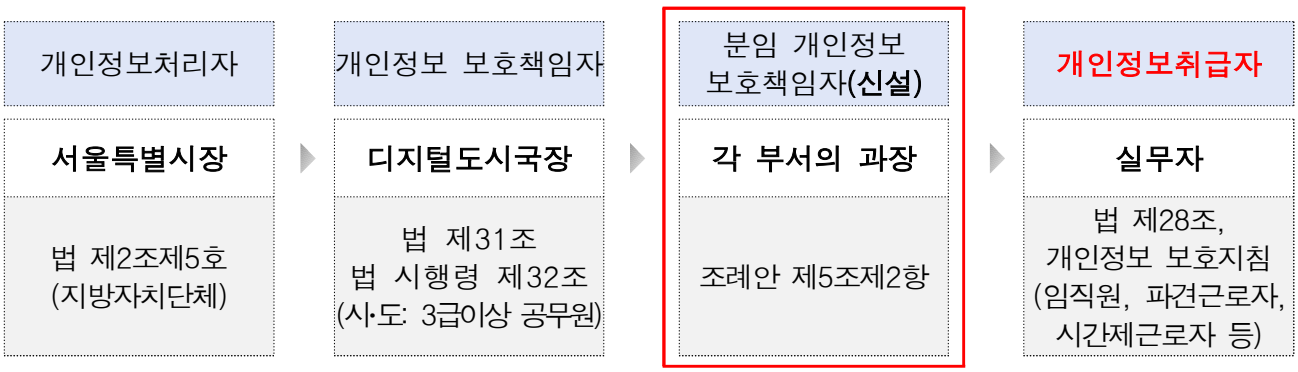

○ 또한, **안 제5조**는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하 '분임책임자')직책을 신설하고,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자로 임명토록 하면서,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업무를 체계화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

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
<신 설>	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내용 보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3]는 디지털도시국장 1명에 불과하나,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이 총 398개, 정보의 수는 약 7억 건에 달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와 책임을 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분임책임자가 신설되면, 부서 단위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강화로 될 것으로 예상됨.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서울시 보유 개인정보 현황 >

구 분	소 계	본 청	사업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189	142	47
개인정보 파일 (개)	398	298	100
정보 수 (건)	704,886,831	682,309,082	22,577,749

*출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 제출 자료, '25.5월 기준

- 다만, 해당 제도가 신설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임책임자 소관의 각 부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체계적인 지원(관리방안·관계법령교육·전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특별시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예시도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대응 방안 구체화(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7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초 '지체 없이' 유출통지 및 신고해야 하던 사항을 시행령 개정[4]사항을 반영하여 '72시간 이내'로 규정[5]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겠음.

---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12.]

5) 시행령에서 '72시간 이내'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나, 최소한의 시간 범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 72시간 이내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경우 등 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할 때에는 ---------- 72시간 이내에 ----------.

- 다만,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약 1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5건이 '담당자 부주의'의 사유인 만큼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③ 기본계획 수립범위

○ **안 제4조의2**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이하 "자치구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6]의 권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위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 ---------- ---------- ----------.

-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2019년도부터 두 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3년도에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자치구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대신 의견수렴만 거쳤으며[7], 분량도 17쪽의 간략한 보고서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기본계획의 시·공간적 범위, 방향, 실행과제 등 내용측면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계획 내용의 종합·조정·제시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차수별 비교표 >

구분	제1차 기본계획(2019년 수립)	제2차 기본계획(2023년 수립)
문서 성격	연구·진단 보고서형(277쪽) → 배경·분석·문제 진단	정책·행정 실행계획형(17쪽) → 추진계획·성과관리
수립주기	최초	4년
현황분석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기관별 운영 현황, 설문조사 결과 등 세부 진단 자료 수록	1차 계획 성과분석만 존재, (사고 현황·설문조사 등 세부 통계·현황 진단은 제외)
중기 로드맵	3개년 중기 로드맵 제시 (과제별 추진 일정과 단계적 이행 계획)	과제별 연도별 계획만 존재
기관별 조사·분석	자치구·투출기관별 현황조사,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기관별 응답 분석 등 기관 단위 세부 분석	기관별 현황조사 내용 삭제, 전반적 전략·과제 중심으로 단순화

7)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은 상위법상 서울시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기관의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

④ 가명정보의 처리

○ **안 제13조의2제4항**은 법령상 결합전문기관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8]에 따라, 시장이 가명정보[9] 처리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현재까지 서울시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적이 없으며, 상황 발생시 국가가 지정한 기관[10]에서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삭제하여도 가명정보처리 업무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11].

- 또한, 시 내부 보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자체 결합도 가능[12]하다는 점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가명정보" 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함.

10) 법에 따라 중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20여개(통계청,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삼성 SDS, SK 등)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상세리스트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11)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9건의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졌으며, 이 중 내·외부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했음.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AI 분석 활용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가명정보 결합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민안전, 긴급복지 등 주요 상황에 능동적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태훈	02-2180-8203

붙임1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2024. 3. 1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붙임2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

*출처: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팀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

단계	상세 업무	비고
사고인지 긴급조치	○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지 및 신고접수 - 유출사고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신고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수행 - 유출된 개인정보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 기술지원 요청 등	유출부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제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접수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및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신고 (72시간 이내)	유출부서 ↓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주체 유출통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72시간 이내) - 통지방법 : 전화통화,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과 경위, 피해 구제절차, 연락처 등	유출부서 ↓ 정보주체
↓		
유출사고 대응센터 구 성	○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구성 - 유출사고 유형에 따라 해당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용역업체 포함 구성 ※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사고 대응센터 구성 ○ 개인정보 유출사고 부서장(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을 처리책임자로 지정 - 유출 규모.경위, 방법, 원인, 관련자 조사 등 증거자료 수집 ○ 조사 및 분석조치, 해결(회수, 삭제, 수사의뢰)	유출부서 정보보안과
↓		
유출사고 결과보고	○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사고 대응보고서 검토, 승인 -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해당부서에 요청	유출 부서
↓		
개선 및 이행점검	○ 유출 개인정보 파기 또는 회수 : 유출부서 ○ 유출사고 부서장은 처리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원인 분석, 개선대책 마련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정보보안과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 전파 및 교육 : 정보보안과	정보보안과